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86
----------	-------

발의연월일 : 2025. 7. 1.

발의자 : 장철민 · 허영 · 김한규  
채현일 · 맹성규 · 허성무  
박용갑 · 조승래 · 이춘석  
송재봉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 인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두면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 근로자, 경력단절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반 상시근로자에 비해 더 높은 금액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청년세대가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임. 따라서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채용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수도권 밖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 ·

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기존 세액공제 금액에 100분의 150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여 비수도권 기업의 고용 여력을 제고하고 지역인재의 지역일자리 취업 및 지역 정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8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로서 해당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수도권 밖의 학교(대학원을 제외한다)를 최종적으로 졸업·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경우에는 해당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550만원
- 나.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1,450만원
- 다. 중견기업: 800만원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경우: 400만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권 밖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8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후단 신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 경우 수  
도권 밖의 지역에서 청년 정  
규직 근로자가 증가한 경우로  
서 해당 청년 정규직 근로자  
가 수도권 밖의 학교(대학원  
을 제외한다)를 최종적으로  
졸업 · 중퇴하거나 재학 · 휴학  
중인 경우에는 해당 청년 정  
규직 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  
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  
우: 1,550만 원

#### 나.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

우: 1,450만원

다. 중견기업: 800만원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외의

	<u>경우: 400만원</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